

고 시

● **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49호**

보급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(평택고덕 Ab-22BL)
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867호(2013.12.30)로 승인 고시된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-22BL 보급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20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- 1. 사 업 명 :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-22BL 보급자리주택건설사업
- 2. 사업시행자
 - 가.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- 3. 사업시행지역 :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, 장당동,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-22BL
- 4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
 - 가.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: 보급자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
 - 나. 사 유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 [지구계획 및 사업유형변경 (공공임대 → 공공분양)]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